

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755
----------	-----

2023년 6월 22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3년 5월 29일, 박춘선 의원 외 41명  
나. 회부일자: 2023년 6월 5일  
다. 상정일자: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23년 6월 22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박춘선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,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·관리함으로써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,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·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실천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 환경교육 정의 및 환경교육센터 명칭·역할 등을 「환경교육법」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법적 완결성·통일성을 보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 당연직과 부위원장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.
- 위원 임기 규정 삭제, 심의·의결 후 위원회 자동 해산 규정(안 제11조제3항).
-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1조제3항).
-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함
- 시장·구청장·사업자 등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.
-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~제5조).
-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.
-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.
-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.
- 사업자와 공무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~제10조).
- 사회환경교육기관과 환경교육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~제12조).
- 환경교육 위탁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~제14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박귀수)

### 가. 개요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,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·관리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며,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<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>

조항	내 용
제명	· 상위법령에 맞춰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안 제3조	· 시장·구청장·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
안 제4조~제5조	·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안 제7조	·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안 제8조	·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
안 제9조~제10조	· 사업자 및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
안 제11조~제12조	·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
안 제13조~제14조	·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

### 나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은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환경교육법」”)에 맞추어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- 안 제2조(정의)는 ‘학교환경교육’ 대상을 「환경교육법」에 맞게 다시 정의한 것이고, 안 제7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는 대상에서 제외된 「영유아보육법」 상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것임.

즉, 「환경교육법」에서 ‘학교환경교육’은 「유아교육법」 상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과 「고등교육법」 상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, 이를 제외한 환경교육은

전부 사회환경교육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

안 제2조에서 「영유아보육법」 상 어린이집을 ‘학교환경교육’ 대상에서 제외 하되, 안 제7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,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- 안 제4조는 환경교육계획의 내용에 환경교육 현황, 환경교육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사전분석과 성과 점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.
- 안 제8조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대상에 종교 단체를 추가하여 환경교육 저변을 확대하려는 것이고, 안 제10조는 연 1회 이상 공무원에 대한 환경 교육을 시행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안 제11조는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 현재 서울시 내 학교와 공공기관 등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할 뿐 아니라, 교육의 수준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므로,

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환경교육 제공 및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## <서울시 환경교육 관련 민간기관 및 전문가 현황>

구분	내용
민간기관	· 총 368개 단체(민간단체 282개, 기업 및 협동조합 86개)
환경교육사	· 총 233명(2급 26명, 3급 207명/1급 없음)

※ 환경교육사: 환경교육 전문가로 '15년부터 운영되던 사회환경교육지도사가 '22년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사를 국가전문 자격제도로 개편됨

<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0조, 제11조>

<p><b>안 제10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</b>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p>
<p><b>안 제11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</b>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.</p>

-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역환경교육센터<sup>1)</sup> 중 시장에게 지정 권한이 없는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의 권한 범위에 맞게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<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기능>

구분	지역환경교육센터	
	광역	기초
위상	광역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	기초단위 환경교육 거점기관
운영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 환경교육 기반 구축</li> <li>· 국가 및 기초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반영한 환경인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</li> <li>· 환경교육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사각 지대 없는 촘촘한 환경교육 추진</li> </ul>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</li> <li>· 광역단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</li> <li>· 지역환경교육종합계획 관리지원</li> <li>· 국가센터와 기초센터와의 연계·협력지원</li> <li>· 광역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</li> <li>·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</li> <li>·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·제공 (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)</li> <li>· 기초 단위의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</li> </ul>

- 이외에도 안 제1조, 제3조, 제6조 및 제9조 등은 상위법령 규정과 같게 문구를 통일하거나 문맥을 정비하려는 것이며, 이에 대한 이견 없음.

1) 지역환경교육센터: 광역환경교육센터(시장)와 기초환경교육센터(구청장)로 구분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·법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.
 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 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  - 다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

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환경교육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계획(이하 “환경교육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
2. 환경교육의 현황
3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5.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
6.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
7.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
8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, 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「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



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교육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확정된 후 교육감,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환경교육계획의 시행)** ① 시장은 교육감, 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감,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교육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감, 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**제6조(환경교육에 관한 자문)**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1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
3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
**제7조(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)** 시장은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1. 환경교육

2.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
3.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5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6.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7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8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**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, 기업,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2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4.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9조(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)**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)**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)**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.

**제12조(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)**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(이하 “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
3.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(이하 “기초환경교육센터”라 한다)에 대한 지원
4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

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이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제13조(환경교육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.  
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
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시행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」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, 사업,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 <신설>

##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		
신청인	기관명	명칭 (법인 [ ], 비법인 [ ])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	
	대표자	성명	생년월일			
	연락처	주소	(우편번호 : )			
		전화번호	전자우편			
	담당자	성명	연락처			
신청내용	기관설립 목적					
	전문인력 (상근) 인적사항	연번	성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소지 자격증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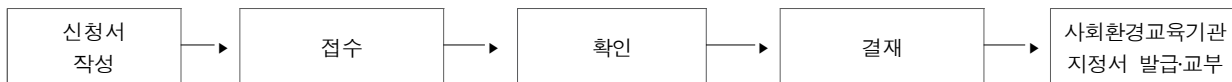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서울특별시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) 1부 2. 환경교육 전문인력(환경교육사 1인 포함) 인적사항 및 자격 서류 1부 3.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서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#### 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서울특별시 (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)

제 호

##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

- 기관명:
- 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:
- 대표자 성명:
- 기관 소재지: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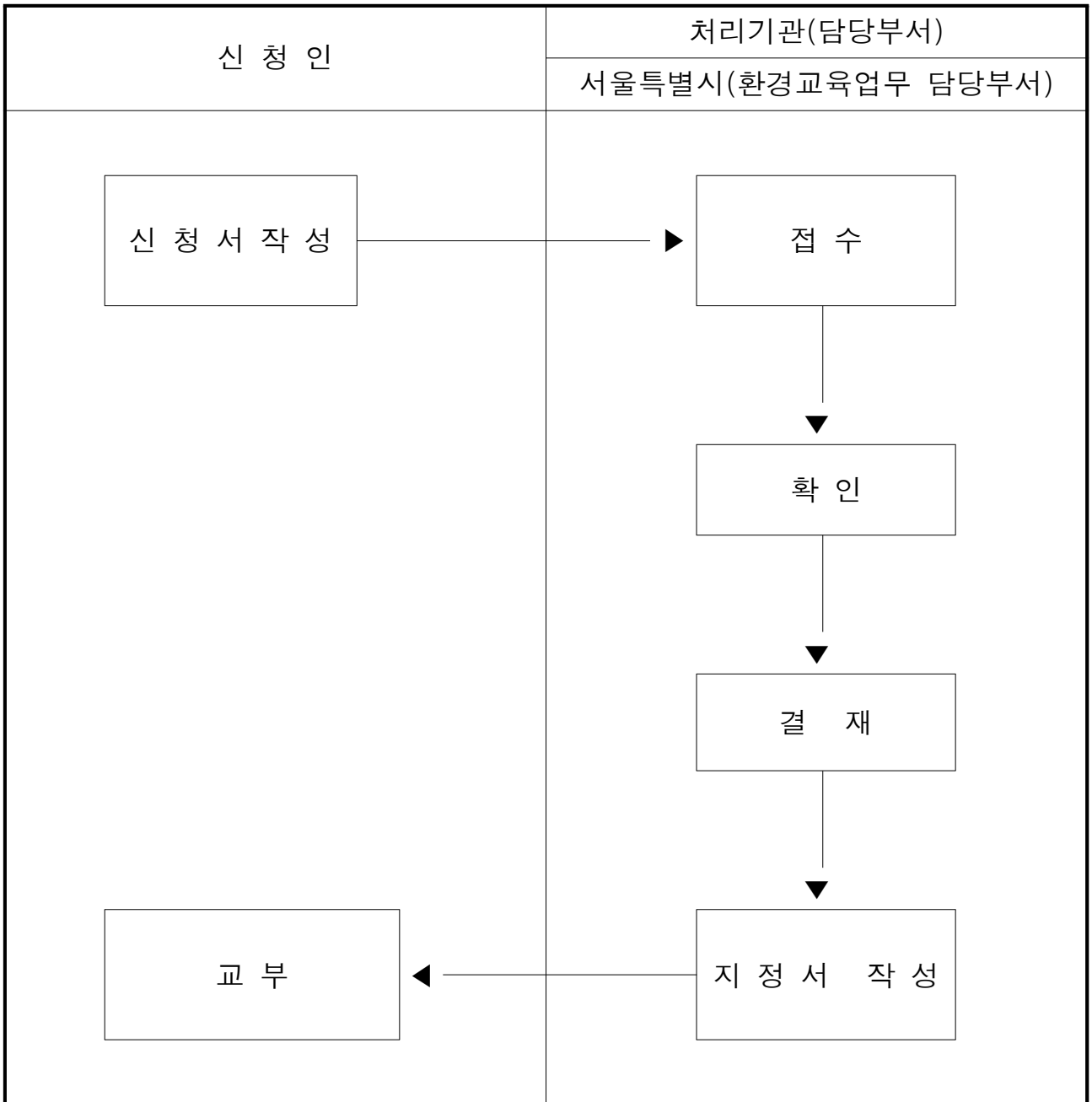
서울특별시장

직인

<b>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</b>		처리기간	
		30 일	
신청인	①기관명(법인명)		②대표자
	③주소		(전화번호: ) (휴대전화: )
	④전자우편주소		
신청내역	⑤환경교육센터 명칭		⑥대표자
	⑦환경교육센터 소재지		(전화번호: )
	⑧개설 예정일		
<p>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 또는 인)</p> <p>서울특별시장 귀하</p>			
<b>구비서류</b> 1. 사업계획서 1부 2.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실적 1부 3.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 4.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1부			<b>수수료 없음</b>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

지정번호	<b>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서</b>
제 호	
1. 기 관 명	
2. 대 표 자	
3. 소 재 지	
4. 지 정 기 간	
<p>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</p>	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	
서울특별시장	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width: 100px; height: 10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직 인</div>